

인권센터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라 우리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루터대학교 인권센터(이하 “인권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

- ①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고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인권센터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고충상담원 2명이상(남·녀 각 1명 이상)과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- ④ 인권센터에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업무를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각각 지정한다.
- ⑤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인권센터 내에 E-mail 등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3조(업무)

- ①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인권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
 2.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상담
 3. 인권침해 등 피해(2차 피해 포함)의 신고 접수 및 조사
 4. 인권침해 등 예방 대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
 5. 인권침해 등 재발 방지 교육 및 조치
 6. 학내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7. 그 밖에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
- ② 인권센터에서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

- ①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 1. 인권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2. 인권센터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3.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·의결
 4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학처장, 총무처장, 총학생회장, 대학원원우회장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인권센터 규정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센터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상담지원센터 팀장으로 위촉한다.

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 훈련의 지원 등)

① 인권센터는 대학구성원의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② 대학구성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학칙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